



[2019. 10. 8.] [30106 , 2019. 10. 8.,]

(, -) 044 - 200 - 5289, 5290
(-) 044 - 200 - 5283, 5293
(-) 044 - 200 - 5305, 5306
() 044 - 200 - 5303
(-) 044 - 200 - 5834, 5835

1

1 () 「 」

2 <2017. 9. 19.>

3 <2017. 9. 19.>

4 () 「 」 (" ") 3 1 1 " "
. < 2019. 7. 2.>

1. 「 」 3

2. 「 」

5 <2017. 9. 19.>

2 .

6 <2017. 9. 19.>

7 () 12 1 " " . <
2016. 12. 30.>

1. 9 .

2. 23 4

3. 77 1

4. 86 1 가

5. 「 」 25 1

6. 「 」 6 1 .

7. 「 」 28 2 .

8. 가 .

7 2() 12 3 1 " "
2 " " 7 1 .

[<2017. 9. 19.>

8 (.) 13 3 3 " " .
1 .

9 (") 15 1 (") , (" ") . 1 (" ") . (" ") . 15 1 2 ,

- 1. ,
 - 2. ,
 - 3. ,
- [2019. 7. 2.]

10 () <2019. 7. 2.> <2019. 7. 2.> 15 2 1 " " .< 2009. 12. 31., 2010. 10. 14., 2017. 1. 17., 2019. 7. 2.> 1.1 2 ,

2. 「 가 」 8 1 1 . . 15 2 2 15 1 2 (" ") .< 2009. 12. 31., 2010. 10. 14., 2017. 1. 17., 2019. 7. 2.>

1.1 1 , 2. 「 가 」 8 1 1 . . 3. 「 」 8 15 2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2019. 7. 2.]

11 (" ") 15 2 2 2 (" ") . < 2019. 7. 2.> 1 「 」 12 2 1 , 「 」 10 2 1 , 「 」 10 2 1 .< 2019. 7. 2.>

12 ()

. <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2019. 7. 2.>

- 1.
- 2.
- 3.
- 4.

1
(" ")

.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 1.
- 2.
- 3.

4. 3 가

5. 4 (15

)가

6. 3 4

(2 6)

.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 1.
- 2.
- 3.

4. 가

3 (" ") (2

6) . < 2019. 7. 2.>

- 1.
- 2.

4 (" ")

.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가 .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13 ()

. <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2018. 1. 16., 2019. 7. 2.>

1. 「 」 12 3

2. 「 」 7 ()

3. 「가」 13

1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1

「가」 32 「가」 7
()

.< 2018. 1. 16., 2019. 7. 2.>

3 4

.< 2019. 7. 2.>

3

4

「가」 「가」 「가」
.< 2018. 1. 16.>

3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4

7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8

.< 2008. 2. 29., 2013. 3. 23.>

14 (가)

가 (" 가 ")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1

가

가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15 () 가

.< 2019. 7. 2.>

12 3

가

.< 2008. 2. 29., 2011. 11. 16., 2013. 3. 23.,

2019. 7. 2.>

1. 「 」 2 1 2
2. 「 」 2 8
3. 「 」 2 6 7
- 4.

2

가 14 2

. <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16 () 16 1 5

. < 2008. 2. 29., 2011. 9. 22., 2013. 3. 23.>

1. 가·

2.

3. (底質)

4.

5.

6.

7.

8.

[2011. 9. 22.]

17 () 16 4

. < 2008. 2. 29.,

2013. 3. 23.>

1.

2.

3. 가

18 <2009. 7. 7.>

19 <2009. 7. 7.>

20 <2009. 7. 7.>

21 <2009. 7. 7.>

22 <2009. 7. 7.>

23 <2009. 7. 7.>

24 () 18 1 1 3

1.

2.

3.

가

.< 2017. 1. 17.>

24 2() 18 2 "

- 1.
- 2.
- [2012. 11. 27.]
- [2013. 3. 23.]

25 () 19 1 1

1 () × ×
 1 72 1
 19 3 3 .< 2011. 9. 22.>
 [2009. 12. 31.]

25 2() 19 1 2 "

" 3 2
 19 1 2 .< 2018. 4. 30.>
 2 () × × ()
 19 2 3 " " 3 1 1 2
 19 3 3 3 .< 2011. 9. 22.>
 22.> .< 2011. 9. 22.>
 [2009. 12. 31.]

26 () 19 1 1 2

(" ")
 15 .< 2009. 12. 31., 2013. 3. 23.>

- 1. 19 1 1 :
- 2. 19 1 2 :
 <2009. 12. 31.>

1 3 15
 15 .< 2009. 12. 31.>
 [2009. 12. 31.]

- 27 () 19 4 5
 () . <
[2008. 2. 29., 2011. 9. 22., 2013. 3. 23.>](#)
 가 가
 . < [2008. 2. 29., 2013. 3. 23.>](#)
 1. 1
 2. 가 가 가
 . < [2008. 2. 29., 2013. 3. 23.>](#)
 1.
 2. 「 」 14 1
- 28 () 27 2 3 ,
 . < [2009. 12. 31.>](#)
 1 ,
 . < [2009. 12. 31.>](#)
 100 6
 < [2009. 12. 31.>](#)
- 29 () 가 . < [2008. 2. 29., 2013. 3. 23.>](#)
 1. 1
 2.
 3. 가 가 가
 . < [2008. 2. 29., 2013. 3. 23.>](#)
- 30 () 가 29 1
 가 30
 1 30
 , 가 29 2
 . < [2008. 2. 29., 2013. 3. 23.>](#)
 1
- 31 <[2018. 4. 30.](#)>
- 32 (가) 20 1 " 가 " 1 1
 1 . < [2018. 4. 30.](#)>

20 1 가

.< 2016. 6. 30., 2018.

4. 30.>

2 가 27 (2 1) 28 .
" " "가 " , " " "가 " .< 2016. 6. 30.>

32 2() 20 2 .가

[2018. 4. 30.]

33 () 21 8 " "

- 1.
- 2.
- 3.
4. (買入) . ,
- 5.

21 9 " "

- 1.
- 2.

[2017. 6. 27.]

3

34 () 22 2 4 .

35 () 23 4

.< 2008. 2. 29., 2013. 3. 23., 2016. 5.

10.>

- 1.
2. 「 」 2 1
3. 「 」 「
4. 「 가 」 23
- 5.

1 1

.< 2016. 5. 10.>

2

가 2

. , 35 2 1

.< 2016. 5. 10.>

< 2016. 5. 10.>

3 4

.< 2016. 5. 10.>

1 5 가 가 . 가 . 가 ,

.< 2016. 5. 10.>

[2016. 5. 10.]

35 2(6) , 1 2

- 1.
- 2.
- 3. 2 2

4. 35 2

5.

6.

1

[2016. 5. 10.]

36 (.) 24 1 . 5

.< 2008. 2. 29., 2009. 7. 7., 2013. 3. 23.>

1

- 1.
- 2.
- 3. .
- 4. .
- 5.
- 6.

. 1 . .< 2008. 2. 29., 2013. 3. 23.>

37 (.) 「 」 10 1

.< 2017. 9. 19.>

24 2 . 가 ,

24 2 . 가 .< 2008. 2. 29., 2013. 3. 23.>

38 (.) 24 4 .

5

1

39 () 32 1
 3 「 2 3 ()
 . < 2018. 4. 30.>
 1 .< 2017. 6. 27.,
 2018. 4. 30.>

1. ()
2. .
- 3.
- 4.
- 5.
6. 63 1 64 1
7. 121 1 .
- ()
8. [2018. 4. 30.]

40 () 36 1
 3
 . < 2018. 4. 30.>

1. , , , , , , ,
2. 1 .< 2017. 6. 27.,
 2018. 4. 30.>
- 1.
2. .
- 3.
- 4.
5. 63 1 64 1
6. 121 1 . ()
7. [2018. 4. 30.]

40 2() 36 2 5 " 23 11
 " 「 11
 . < 2018. 1. 16., 2018. 4. 30.>
 [2014. 9. 24.]

41 () 39 2
 . < 2008. 2. 29., 2013. 3. 23.>
 1. 「 11

- 2. 「 」 16
- 3. 「 」 18
- 4. 「 」 19
- 5. .

41 (.) 39 2

. < 2008. 2. 29., 2013. 3. 23., 2017. 3. 27.>

- 1. 「 」 11
- 2. 「 」 16
- 3. 「 」 18
- 4. 「 」 19
- 5. .

[: .] 41

4

42 () 44 1 " "

< 2011. 9. 22.>

- 1. 1.0 () , 3 1 1 2
0.05 () .
- 2. (A) 2.0 () , (B) 3.0 ()
(C) 3.5 () .
44 2 " " 0.1
() .< 2011. 9. 22., 2019. 7. 2.>

42 () 44 1 " "

< 2011. 9. 22., 2019. 7. 2.>

- 1. 0.5 () , 3 1 1 2
0.05 () .
- 2. 0.5 () .
44 2 " " 0.1
() .< 2011. 9. 22., 2019. 7. 2.>

[] 42 1 2

- 1. : 2020 1 1
- 2. : 2021 1 1
[: 2020.1.1.] 42 1 1

43 () 45 1 " "

. < 2008. 2. 29., 2013. 3. 23.>

- 1. 가. (가)

. 가
2. 1
가. 43 1

.
. 가

5

44 (가 .) 61 1 가
. < 2011. 9. 22.>

1.
가. 가
. .
. , .
. 가 .
. 가
. .

2.
가. 가가
. , , .
. ,
. 가
. 가
. < 2014. 11. 19., 2017. 7. 26.>

. <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45 (.) 62 3 (" " . <
) , < 2014. 11. 19., 2017. 7. 26.>

가
. < 2011. 9. 22.>

1. . 가
2. 가
3.
4. .

5.

6. 1 5

가

.< 2011. 9. 22., 2014. 11. 19., 2017. 7. 26.>

.< 2011. 9. 22., 2014. 11. 19., 2017. 7. 26.>

46 <2011. 9. 22.>

47 () 63 1 " "

48 () 64 1

1.

2.

3.

4.

5.

6. 2

7.

가

1
. < 2014. 11. 19., 2017. 7. 26.>

1.

2.

3.

49 () 64 3

1.

2.

3. 48 1

50 () 64 4 68 4 63 1 1 2

(" ")
7 . < 2011. 9. 22., 2018. 4. 30.>

, 68 2 68 4

1

.< 2011. 9. 22., 2018. 4. 30.>

51 () 96 1 (" "
) 67 1 2 (" ") . (

·) 8 . < 2018. 4. 30.>
1 . < 2008. 2. 29., 2013. 3. 23.>

67 4
가 .< 2018. 4. 30.>

52 () , · · 4
(" ") 가
. < 2014. 11. 19., 2017. 7. 26., 2019. 7. 2.>

1 , 가

- 1. 1 가
- 2. 68 1 가
- 2

68 2 3 " " 「 」 2 5 ()
. < 2009. 12. 14., 2011. 9. 22.>

53 () 68 4 " " · , 가
. < 2011. 9. 22.>

54 () 가 69 3
9 .

.< 2011. 3. 9.>

- 1. 가
- 2.

2 , , ,
. < 2011. 3. 9.>
(3) 90

< 2011. 3. 9., 2017. 9. 19.>

4 30
가

.< 2011. 3. 9.>

3 .< 2011. 3. 9., 2014. 12. 30.>
98 1 .<

2011. 3. 9.>

54 2(가) 69 2 1 " 가 " 1
1 1 .

[2018. 4. 30.]

54 3() 69 2 2 · 가 ·

[2018. 4. 30.]

54 4() 69 3 1

1. 67 1 1 2 :

가. 「 8 2

. 「 4 1

. 「 32

2. 67 1 3 :

가. 1

. 33

. 「 176 1

. 「 246 2

69 3 1

30

()

1.

2.

3.

4.

[2018. 4. 30.]

6

55 () 70 1 1 • 4 5

() 10

()

」 36 1

, 2

. < 2008. 2. 29.,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7. 6. 27.>

1. ()

2. 가 가

70 1 2 3

(" • ")

10 ()

• 1 .< 2014. 11. 19., 2017. 7. 26.>

1 2

.< 2011. 9.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71

2. 11

3.

4.

1 2

.< 2008. 2. 29., 2011. 9.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56 () 70 2

11

56 2() 70 2 1 "

" 23 1

[2012. 11. 27.]

57 () 76 3

35 1

1 3

70 1 1

「 」 6

. < 2011. 9. 22.>

7

58 () 77 1

77 2

77 3

"

가

" " " 12

(" ")

13

" 가 3 , "

"

< 2008. 2. 29., 2013. 3. 23.>

1.

2.

가

59 () 78

14

60 () 80

. < 2008. 2. 29., 2013. 3. 23.>

80 1

"

"

1.

22 3 1 3

2.

가

60 2() 83 2 3 (「

」 2 1

) 가

1.

2.

3.

(가)

83 2 3

83 2 1 3

가

2

14

1.

(諸元)

2.

3.

2

83 2 1 3

「 」

[[2013. 6. 17.](#)]

8

61 () 84 1 가 (" ")
 (" ")
 1 15 .

62 () 84 1 3 " " . < [2019. 7. 2.](#)>

63 (가) 85 1 " " 16
 . < [2009. 12. 31.](#)>

85 1 가 「 가
 」 3 가 (" 가 ") . , 가
 「 」 2 가(「 」 2 1
) . < [2008. 12. 24.](#),

[2010. 10. 14.](#), [2012. 7. 20.](#)>

1. 「 」
2. 「 」 22
3. 「 」 34
4. 「
 85 1 9 " " 「 」 8 1
 11 . < [2012. 11. 27.](#)>

<[2013. 3. 23.](#)>

64 (가) 85 가 10

86 1 가 (" 가 ")
 가 가 가

. < [2008. 2. 29.](#), [2009. 12. 31.](#), [2013. 3. 23.](#)>

65 (가) 86 1 가 가
 () . < [2008. 2.](#)

[29.](#),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1. <[2010. 11. 2.](#)>
2. 1 . , 1
3. (가)
 1

1 「 」 36 1
2 3
. < 2010. 11. 2., 2013. 3. 23.>

- 1.
- 2.
- 3. 가
1
. < 2011. 9. 22., 2013. 3. 23.>

- 1. 87
- 2. . .
- 3.

66 (가) 65 가
. < 2008. 2. 29., 2013. 3. 23.>

67 () 91 1 가("
") 가
. < 2008. 2. 29., 2013. 3. 23.>

91 1
. < 2008. 2. 29., 2013. 3. 23.>

91 2 " "
, " " 15 2
< 2011. 9. 22.>
. < 2008. 2. 29., 2013. 3. 23.>

- 1.
- 2.
- 3. , .
- 4. (가)
4 1 . , 가
. < 2008. 2. 29., 2013. 3. 23.>

68 () 92 1
. < 2008. 2. 29., 2013. 3. 23.>

- 1.
 - 2.
 - 3.
- 92 2
. < 2008. 2. 29., 2013. 3. 23.>

- 1.
- 2.
- 3.

가

69 ()

93 2

1 31

. < 2008. 2. 29., 2013. 3. 23.>

· 가 (" ")가

2

2

2

2 3

.< 2008. 2. 29., 2013. 3. 23.>

93 2

.< 2008. 2. 29., 2013. 3. 23.>

70 ()

94 1

. < 2008. 2. 29., 2013. 3. 23.>

94 1

"

"

.<

2011. 9. 22., 2013. 3. 23.>

1. 가

2. 가

3. 가 가

71 ()

)

95 4

17

95 4

.<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2. 91 1

가

9 < 2018. 4. 30.>

72 ()

97 1 3

"

"

1. 31 1

35 1

2.

3.

4.

5. ()

97 1 8

"

"

.< 2008. 2. 29.,

2013. 3. 23.>

1. 76 2 . . .
2. 77 1
3. 86 1 가
4. 110 5 .
- 5.
- 6.
- 7.
- 8.
- 9.

97 2 " " . < 2008. 2. 29., 2013. 3. 23., 2017. 6. 27.>

1. 9 1
2. 18 1 . ,
3. 38
4. 111 3
- 5.
- 6.

73 () 102 5 .

1. .
- 2.
3. 104 .
4. 106
5. .
6. .
- 7.
- 8.

74 () 104 1 . < 2008. 2. 29., 2013. 3. 23.>

- 1.
2. 가
- 3.
- 4.

75 () 104 3 . < 2008. 2. 29., 2013. 3. 23.>

- 1.
- 2.
- 3.
- 4.
- 5.

76 () 106 1
가

77 ()
1

78 2 1 6

78 () 2 가
가 가

- 1.
- 2.
- 3.
- 4.
- 5.
6. 가 가
- 7.
8. 가

79 () 78
가

80 ()

81 (가) 가 가
1 가

82 ()

- 1.
2. 78 2 2 5 (78 2 2)
- 3.
- 4.

83 ()

- 1.
- 2.
3. 78 2 2 5 8
1

- 1.
- 2.

84 () (利權)

1

85 ()

86 () 107 2 11 30

. < 2008. 2. 29., 2013. 3. 23.>

1

.< 2008. 2. 29., 2013. 3. 23.>

87 () 107 3

. < 2008. 2. 29., 2013. 3. 23., 2016. 5. 10., 2018. 10. 30.>

- 1.
- 2.
- 3. 「 」 23 「 」 2 7

4.

10

88 () 112 1 2

. <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1.>

1

5

.<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18

1

<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89 () 115 1

. < 2008. 2. 29., 2009. 12. 31.,

2013. 3. 23.>

3. 「
4. 「 76
20

.<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가. 89 1

.
. .
. .
. .

. (,)

2.

가. 94 2 8

.
. 가
. 가
. 가

. (,)

. 가
. 가

91 () 가 가 119 3

- 1.
2.
3.
4. . .

91 2() 119 2 1 (" ")
, , . . (" ")
,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30 .< 2013. 3. 23.>

300

18 2

2

. , 2

.<

2013. 3. 23.>

[2011. 9. 22.]

92 (.) 32 36

70 2

121 2

. < 2017. 6. 27.>

- 1.
- 2.
- 3.

<2017. 6. 27.>

1 <
 2008. 2. 29., 2013. 3. 23.>

93 () 122 2 .
 69 1 가 67 2 .

94 () <2014. 11. 19.>
 123 1 .<
 2008. 2. 29., 2011. 9. 22.,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 1. <2014. 11. 19.>
- 2. <2014. 11. 19.>
- 3. <2014. 11. 19.>
- 4. <2014. 11. 19.>
- 5. <2014. 11. 19.>
- 6. <2014. 11. 19.>
- 7. <2014. 11. 19.>
- 8. 115 1

가.

94 4 19

- 9. 119 2
- 10. <2014. 11. 19.>
 <2011. 9. 22.>

123 1

< 2008. 2. 29., 2009. 12. 31., 2011. 9. 22., 2012. 11. 27., 2013. 3. 23., 2013. 4. 22., 2014. 9. 24.,
 2014. 11. 19., 2014. 12. 16., 2015. 1. 6., 2016. 12. 30., 2017. 6. 27., 2018. 4. 30., 2019. 7. 2.>

1. 18 1 (「 」 3 2 1 가)

1 2. 18 3

1 3. 19 1 .

1 4. 22 2 1

1 5. 32 2 1 (" ")

1 6. 32 2 3

2. 33 1 (「 」 3 2 1 가 「
 」 2)

2 2.	36	2 2	4	(「 」 3 2 1 가 「
		」 2)
2 3.	47	2 1		
3.	49	54		
4.	55	1		
5.	58	1	2	
6.	59	1		
7.	60			
8.	70	1 1	• 4 5	•
8 2.	72	3		•
8 3.	73			
9.	74	3		,
10.	75	1		,
10 2.	76	1		•
11.	84	1		()
12.	85	1		가()
13.	86	1	가	
13 2.	86	2	가	
14.	89	1	가	
14 2.	91	4	• 가	
14 3.	93	1	3	
14 4.	95	1		
14 5.	95	2		
15.	110	3		
15 2.	110	3		•
16.	110	5		
17.	110	6		
18.	110	9		
18 2.	110	1 3		110 3 2
19.	115	1	()
19 2.	115	2	(「 」 3 2 1 가 「	」 2) •
20.	116	1		
20 2.	116	2 1	2	
21.	117		• • •	
22.	120	2		,
23.	120	4	가	

24. 120 5

25. 133 (6 4)

123 1

.<

2009. 12. 31., 2011. 9.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4. 30., 2019. 7. 2.>

1. 35 1 2

2. 64 3 4

3. 67 3

4. 67 4

5. 68 1 , 2 4

6. 70 1 2 3

7. 72 1

8. 74 3

9. 75 1

10. 111 1 2

11. 114 1

12. 115 3 4

13. 116 1

13 2. 116 2 1 2

14. 117

14 2. 119 2

15. 120 2

16. 133

123 1

.<

2009. 12. 31., 2011. 9. 22., 2013. 3. 23., 2014. 9. 24., 2017. 6. 27., 2017. 9. 19., 2018. 4. 30.>

1. 18 1 (「 2 3 가 가 , 「 」)
3 1 2 (「 2 2)

2. 33 1 (「 」 3 2 1 가 「 」 2)

2 2. 36 2 2 4 (「 」 3 2 1 가 「 」 2)

3. 115 2 (「 」 3 2 1 가 「 」 2)

4. 133 (「 」 3 1 2 2 2)
132 2 1 4 19 「 」 3
2 1 가 「 」 2

132 2 2 2 2 2 4)

[2017. 7. 26.]

95 () 123 3

. < 2008. 2. 29., 2013. 3. 23., 2013. 4. 22., 2016. 12. 30., 2017. 6. 27., 2018. 4. 30.>

- 1. 9 1
- 2. 11
- 3. 12 1
- 4. 18 1
- 5. 24 3
- 6. 38 1
- 6 2. 39 1
- 7. 66 1
- 8. 111 3
- 9. 121 1

123 3

1 2

- 1.
- 2.
- 3. ()
- 4. 가
- 5.
- 6.

96 () , 123 1

. < 2008. 2. 29., 2009. 12. 31., 2011. 9. 22.,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96 2() (123 1 3)
 가 「 」 19 1 • 2 4
 , 가 . < 2017. 7. 26., 2018. 4. 30.>

- 1. 71
- 2. 81
- 3. 87 가
- 4. 101
- 5. 110 3 2

[2014. 12. 30.]
 [96 2 96 3 <2014. 12. 30.>]

96 3() 3 ()
 3) .

- 1. 54 : 2015 1 1
 - 2. 61 15 : 2014 1 1
- [2014. 12. 30.]
 [96 2 <2014. 12. 30.>]

11

97 () 132 2 1 " " . < 2008. 2. 29., 2013. 3. 23.>

98 () 132 19 .
[2011. 9. 22.]

< 20544 ,2008. 1. 11.>

1 () 2008 1 20 . , 42 1 1 2012 1 1
, 16 . 3 2008 2 4 .

2 () 「 」 .

3 () 「 」

53 2010 12 31 92 1

92 2 . 2011 1

1

4 () 가

12 7 " 「 」 4 4 " " 「 」 15 1 2 " .

2 1 " 「 」 4 8 " " 「 」 84 1

" .

1 1 " " " 「 」 " .

2 1 3. 5 , 4 가 (4) () 5 7.

4 " " " 「 」 " .

3 1 5 " 「 」 35 2 " " 「 」 23

1 " , 2 3 " 「 」 35 2 "

" 「 」 23 1 " .

2 1 6 .

6. 「 」

13 1 2 , 3 .

2. 「 」 96

22 2 " 「 」 " " 「 」 " .

5 1 5 " 「 」 16 4 " " 「 」 23 1
"

1 2 1 4. 2 4. " 「 」
" " 「 」 "

3 2 가 1. 1. " 「 」
" 「 」 " 「 」 "

5 5 " 「 」 4 3 3 " " 「 」
10 "

6 " 23 " " 「 」 47 " .

20 2 12
12. 「 」 84 ()

22 1 2 " 「 」 " " 「 」 .
"

가

38

38. 「 」 14 1

4 8 " 「 」 4 4" " 「 」 15 1 " .

⑩

2 1

⑪

12 2 7 " 「 」 " " 「 」 " , 11
" " " " "

15 2 4 , 26 2 , 43 1 , 44 3 , 51 2 , 55 3 , 58 3
1 , 67 1 , 88 1 , 89 4 , 92 3 , 96 , 97 , 98
4 , 6 ' , 12 ' 1 3 , 16 '

17 1 " " " " .
18 1 "
" " .
.

94 2 8 4 , 96 " " " "

94 3 2 8
<135> <138>

< 21185 ,2008. 12. 24.>(가)

1 () 2009 1 1 . < >

2 3

4 () ⑱

⑲

63 2 " 「 . . 가 」 " " 「 가

」 "

⑳ ㉔

5

< 21214 ,2008. 12. 31.>()

1 () . < >

2 4

5 () <165>

<166>

12 1 " " " " .

<167> <175>

< 21622 ,2009. 7. 7.>()

1 () , < > 2 2009 8 7

2 ()

9 4 " 17 1 " " 「 」 7

")"

18 23

36 1

< 21882 ,2009. 12. 14.>()

1 () . < >

2 5

6 () ㉓

㉔

3 1

1. 「 」 2 2 3

52 4 15 1 가 " 「 」 2 6 " " 「 」 2 5 " .

㉕ ㉗

7

< 21964 ,2009. 12. 31.>

< 22151 ,2010. 5. 4.>()

1 () 2010 5 5 .

2 3

4 () <188>

<189>

55 1 65 " 「 」 21 1 " " 「 」

36 1 "

<190> <192>

< 22449 ,2010. 10. 14.> ()

1 () 2010 10 16 .

2 3

4 () ⑳

㉑

10 3 2 4 2 " " 5 1 1 " " " "

8 1 1 " .

63 2 " " " " " " " "

15 1 . " " 5 1 1 " " " "

8 1 1 " , " " 5 1 2 " " " "

8 1 2 " , " " 5 1 3 " " " "

8 1 3 " , " " 5 1 4 " " " "

8 1 4 " , " " 5 1 5 " " " "

8 1 5 " , " " 5 1 7 " " " " 8

1 7 " .

15 1 " " 9 " " " "

28 " , " " 2 " " " " 2 " ,

2 .

8 1 11

16 " " 5 1 7 " " " "

8 1 7 " , . " " "

5 1 9 " " " 8 1 9 " .

㉒ ㉓

5

< 22467 ,2010. 11. 2.> ()

< 22706 ,2011. 3. 9.>

1 () .

2 () 54

< 23158 ,2011. 9. 22.>

- 1 () . , 42 1 2012 1 1 .
- 2 ()) 25 2 4 3
- 1 1 2 .
- 3 ()) 91 2
- 4 ()) 15 16 84 1
- 85 1 . 가
- 5 ()) .

< 23297 ,2011. 11. 16.> ()

- 1 ()) . < >
- 2 ()) ①⁹
- ②⁰
- 15 2 2 " 「 」 2 5 " " 「 」
- 2 8 " .

< 23964 ,2012. 7. 20.> ()

- 1 ()) 2012 7 22 .
- 2
- 3 ())
- 63 3 3 " 「 」 24 " " 「 」 71 " .
- 4

< 23966 ,2012. 7. 20.> (가)

- 1 ()) 2012 7 22 . < >
- 2 4
- 5 ()) ③⁵
- ③⁶
- 63 2 " 「 가 」 1" " 「 가 」 3" .

㉟ ㉠

6

< 24207 ,2012. 11. 27.>

1 () 2012 12 2 .
2 (가) 32 1 2013 1 1

< 24443 ,2013. 3. 23.> ()

1 () . < >
2 5

6 () <143>

<144>

5 2 7 , 3 , 6 1 , 9 1 , 2 , 3 • 4 , 10
5 , 11 1 , 12 1 , 2 , 3
, 4 , 5 • 6 , 13 1 , 2 , 7 9
, 14 1 , 2 , 3 , 15 3 , 16 8 , 24 2 ,
26 1 , 27 1 , 2 , 3
• , 29 1 , 2 , 30 2 , 35 1 ,
2 , 36 1 • 3 , 37 3 , 41 , 55 1 • , 3
, 4 , 60 1 , 64 3 , 65 1 , 2
, 3 , 66 , 67 1 • , 2 , 4
, 5 , 68 1 , 2 , 69 1
• 4 • 5 , 70 1 , 71 2 2 , 72 2 9 , 3 6 , 74
, 75 , 86 1 • 3 , 87 , 88 1 • 2 • 4 ,
89 1 , 3 , 90 1 , 2 1
, 91 2 1 , 94 1 , 2 , 4
, 6 , 95 1 , 96 , 1 2 , 2
2 , 9 3 , 10 ,
3 , 15 3 , 17 2 19 2
" " "
15 2 4 , 26 1 , 43 1 , 44 3 , 51 2 , 55 3
3 , 4 , 58 3 1 , 64 3 , 65 3 2 , 67 1 , 70 2 3
, 88 1 , 89 4 , 91 2 1 , 92 3 , 96 , 97 , 6

, 12 1 3 18 2
 " " " " .
 17 1 " " " " .
 63 4 .
 91 2 1 • 2 4 " " " " .
 <145> <146>

< 24517 ,2013. 4. 22.>

< 24627 ,2013. 6. 17.>

1 () 2013 6 19 .
 2 () 60 2 「
 」 2 1 .

< 25050 ,2013. 12. 30.> ()

2014 1 1 . < >

< 25639 ,2014. 9. 24.>

2014 9 25 .

< 25758 ,2014. 11. 19.>

1 () .
 2 () 94 1 1

, , ,

94 2 1 7 10 ,

, , 94 4 .

< 25840 ,2014. 12. 9.> ()

1 () 2015 1 1 .

2 16

< 25860 ,2014. 12. 16.>

1 ()

2 () 15

84 3

< 25943 ,2014. 12. 30.>

2015 1 1

< 25985 ,2015. 1. 6.> ()

1 ()

2 3

4 () ㉓

㉔

94 2 8 , 4 96 " " "

"

㉕ ㉖

5

< 26220 ,2015. 4. 29.>

< 26473 ,2015. 8. 3.> ()

1 () 2015 8 4

2 6

7 ()

90 1 3

3. 「 」 20

8

< 27165 ,2016. 5. 10.>

.

< 27299 ,2016. 6. 30.> ()

1 () 2016 7 1 . < >

2 7

8 (「 」) 「 」 32 2 3

20 1 가 .

9 15

< 27748 ,2016. 12. 30.>

.

< 27792 ,2017. 1. 17.> ()

1 () 2017 1 28 .

2 6

7 () ㉔

㉕

10 3 1 , 4 1 , 13 1 1 24 2 "

" " "

㉖ ㉙

< 28169 ,2017. 6. 27.>

2017 6 28 .

< 28211 ,2017. 7. 26.> ()

1 () . , 8

2 7

8 () <329>

<330>

44 2 , 45 1 • 6 , 48 2 , 52 1 , 55 2 ,

3 , 4 , 88 1 • 2 • 4 , 89 4 , 90 1

, 2 2 , 91 2 1 , 94 5 , 96
 96 2 " " " " .
 44 3 89 4 " " " " .
 45 1 " " " " .
 45 5 , 94 5 96 " " " " .
 55 3 3 , 4 , 88 1 , 91 2 1 96 " " .
 " " .
 94 "()" "()" , 2 " " " " .
 9 3 " " " " " .
 <331> <388>

< 28332 ,2017. 9. 19.>

1 () 2017 9 22 .
 2 () 54 4 ()
 3) .

< 28583 ,2018. 1. 16.>()

1 () 2018 1 18 .
 2 () ㉔
 ㉕ .
 13 1 1 , 4 6 " 「 」 " " 「 」 " .
 ㉖ ㉗

< 28586 ,2018. 1. 16.>()

1 () 2018 1 18 . < >
 2 6
 7 () ㉘
 ㉙ .
 40 2 " 「 」 11 3
 3 " " 「 」 23
 11 " .

8

< 28845 ,2018. 4. 30.> ()

1 () 2018 5 1 .

2 3

4 ()

89 3 3 " " " " .

< 28846 ,2018. 4. 30.>

1 () 2018 5 1 . , 9 3 , ,

2019 1 1 .

2 ()

25 2 2 .

3 () 1

9 3 .

1 2018

9 3 .

4 () .

33 3 2 2 " " " " .

5 " " " " " .

12 2 5 " " " " .

2 2 5 " " " " .

28 1 2 " " " " .

1 2 95 .

95.

23 2 " " " " " .
 14 3 19 " " " " " .
 3 1 1 " " " " " .
 35 2 3 1 " " " " " .
 11 2 5 " " " " " .
 55 1 " " " " " .

< 29269 ,2018. 10. 30.> ()

1 () 2018 11 1 .
 2 9
 10 () ⑤0
 <51>
 87 3 " 「 」 3 1 2 " " 「
 」 2 7 " .
 11

< 29849 ,2019. 6. 11.> ()

1 () 2019 7 1 .
 2 ()
 88 1 " " " " " .

< 29948 ,2019. 7. 2.>

1 () 2019 7 9 . , 42 1 1 9 2020
 1 1 , 42 1 2 , 4 ,
 11 2 , 42 2 8 .
 1. : 2020 1 1
 2. : 2021 1 1

2 () 42 1 2
2021 1 1 49 50 2021
12 31

3 () 9 2 2020 1 1

< 30106 ,2019. 10. 8.> ()

1 ()

2 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삭제 <2019. 7. 2.>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2019. 7. 2.>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12.31>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

1.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부과금액
폐기물	1,100원/세제곱미터(m³)

비고 : 배출량이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한다.

2. 종류별 부과계수

폐기물 종류	부과계수산출기준			부과계수 (A×B×C)
	육·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 (A)	오염도계수 (B)	정책계수 (C)	
분뇨	1.0	1.0	1.2	1.2
가축분뇨	1.0	1.0	1.2	1.2
폐수	1.2	1.0	1.1	1.32
분뇨처리오니(汚泥)	1.3	1.5	1.2	2.34
폐수처리오니	1.1	1.5	1.4	2.31
하수처리오니	1.0	1.5	1.0	1.5
원료동식물폐기물	1.2	1.5	1.0	1.8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폐기물	1.1	1.5	1.4	2.31
수산가공잔재물	1.1	1.5	1.0	1.65
수저준설토사	1.0	1.0	1.0	1.0

비고

1. 폐기물의 종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로 분류한다.
2. 폐기물의 특성상 무게단위(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1.2의 계수로 나누어 환산·적용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09.12.3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

오염물질	배출규모
기름	1,000리터(ℓ)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11.9.22>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

1.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부과금액
기름	350원/리터(ℓ)

2. 종류별 부과계수

기름의 유형	해역계수			오염도 계수(해양환경복원계수) (D)	부과계수		
	환경보전해역 (A)	특별관리해역 (B)	그 밖의 해역 (C)		A×D	B×D	C×D
원유	1.2	1.4	1.0	1.4	1.68	1.96	1.4
중유	1.2	1.4	1.0	1.4	1.68	1.96	1.4
운활유	1.2	1.4	1.0	1.0	1.2	1.4	1.0
경유	1.2	1.4	1.0	0.6	0.72	0.84	0.6
휘발유·등유·탄화수소유	1.2	1.4	1.0	0.3	0.36	0.42	0.3

비고: 기름의 종류가 2가지 이상 혼합 배출되어 그 배출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염계수가 큰 기름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

구분	범위
해수욕장	광역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및 마을해수욕장
하구역	조석의 영향을 받는 감조구역(感潮區域)의 상류경계 및 하구로 유입되는 유입하천의 유역
항만구역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어항구역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면허수면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수면
발전소	발전소와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20km 이내의 해역
제철소	제철소와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10km 이내의 해역
정유소	정유소와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10km 이내의 해역(정유소를 포함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범위(제38조제1항 관련)

1. 수거·처리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수거·처리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거·처리를 위하여 사용되기 바로 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수거·처리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든 비용
4. 수거·처리에 든 선박의 운항비·인건비(여비 및 후생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비용
5. 수거·처리를 위한 선박의 예인이나 기계·기구·물품 등의 운반 등에 든 비용
6.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3.3.23>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

종류		양·농도	확산범위
폐 기 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젠화합물	10kg 이상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kg 이상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200kg 이상	
	동·식물성 고형물, 분뇨, 오니류	200kg 이상	
	그 밖의 폐기물	1,000kg 이상	
기름	배출된 기름 중 유분이 100만분의 1,000 이상이고 유분총량이 100ℓ 이상	배출된 기름이 1만㎡ 이상으로 확산되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유 해 액 체 물질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10 ℓ 이상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류 물질	100 ℓ 이상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Z류 물질	200 ℓ 이상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10 ℓ 이상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

1.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운항비·인건비(여비 및 후생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비용
5.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의 예인, 기계·기구·물품 등의 운반,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

비고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계·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급부함으로써 금전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7. 2.>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 (제51조 관련)

1. 선박

유조선	유조선 외의 선박	기름회수능력 (시간당)	배치방법
톤급별(총톤수)	톤급별(총톤수)		
500 이상 1,000 미만	1만 이상 3만 미만	35kl 이상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1,000 이상 5,000 미만	3만 이상 5만 미만	50kl 이상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5,000 이상 1만 미만	5만 이상	70kl 이상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1만 이상 5만 미만	-	100kl 이상	총톤수합계 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5만 이상 10만 미만	-	170kl 이상	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10만 이상	-	290kl 이상	7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2. 기름저장시설

저장용량(kl)	기름회수능력 (시간당)	배치방법
1만 이상 5만 미만	80kl 이상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5만 이상 10만 미만	120kl 이상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10만 이상 50만 미만	170kl 이상	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50만 이상 100만 미만	250kl 이상	7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100만 이상 250만 미만	330kl 이상	10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2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250만 이상 500만 미만	420kl 이상	12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500만 이상	720kl 이상	1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2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3. 비고

가. 기름회수능력은 장비에 표시된 성능으로 하되, 표시된 성능의 적정 여부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선급업무를 수행

하는 외국의 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시험성적서에 따라 판단한다.

- 나. 방제선은 유회수기, 기름이송펌프 및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하 "회수유 저장장치"라 한다)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 다.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회수유 저장장치를 해당 방제선의 운항속도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분산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 마. 방제장비는 배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기계·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 바. 기름저장시설이 기름의 비축용 또는 비상용으로만 설치·사용되는 경우에는 방제장비만으로 기름회수능력을 갖추 수 있다.
- 사. 배치·설치 대상 기름저장시설 또는 선박을 2곳(또는 척) 이상 소유한 자가 같은 해역에 방제선·방제장비를 배치할 경우에는 각각에 적용되는 배치기준 중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기준을 적용한다.
- 아. 공동배치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

$$A + (B \times 0.5)$$

A : 공동배치대상 중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것

B : A를 제외한 공동배치대상이 각각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의 합계

- 자.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역(이하 이 표에서 "해역"이라 한다)에서 둘 이상의 배치의무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중 가장 큰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이사장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선등을 해역 간 또는 같은 해역에 재배치·재설치하거나 추가로 배치·설치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8. 4. 30.>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

1. 대상: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2. 부과기준

가. 선박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부과 방법
유조선	내항선	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4.77원	매 1회 입항할 때마다
	외항선		14.32원	
유조선 외의 선박	내항선		2.48원	
	외항선		7.45원	

나. 기름저장시설: 유류 수령량 100 ℓ 마다 8.66원

3. 부과절차

가. 선박의 방제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입항할 때마다 부과하며, 배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입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입항하는 경우에는 1회의 입항으로 본다.

나. 삭제 <2018. 4. 30.>

다. 삭제 <2018. 4. 30.>

라. 공단은 기름저장시설의 분담금을 1년간 해상으로부터의 수령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 1월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배치의무자는 매분기 말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거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해당 기름저장시설에 유류의 저장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한다.

1)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는 경우: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2)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하는 경우

가) 이용 개시 연도의 분담금: 해당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이용 개시일부터 이용 개시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日割)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나) 이용 개시 다음 연도의 분담금: 전년도 이용기간 중 유류 수령량을 기준으로 1년간 유류를 수령하였을 경우를 계산하여 수령량을 환산한 연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3)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전년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이용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마. 삭제 <2018. 4. 30.>

바. 삭제 <2018. 4. 30.>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기름에 대하여는 유류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전년도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출하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본다.

아. 분담금 납부대상 유종과 유사한 비중과 점도를 지닌 물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양경찰청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자. 분담금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17. 6. 27.>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제5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업종	첨부서류
폐기물해양배출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계획서 3.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4.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7. 폐기물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8.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한정한다) 4.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5.4.29>

해양환경 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제56조 관련)

구 분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 업
기술 능력 기준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해양 환경기사, 수질환 경산업기사, 폐기 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 에서 5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해양 환경기사, 수질환 경산업기사, 폐기 물처리산업기사, 기관사 5급 이상 의 자격증을 소지 한 자 또는 해양 오염방제업·유창 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다만,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 하는 경우에는 중 복하여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해양 환경기사, 해양공 학기사, 해양조사 산업기사, 잠수산 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소지한 자 또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해양 환경기사, 해양공 학기사, 해양조사 산업기사, 토목산업 기사,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산업기 사, 수질환경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 증을 소지한 자 또 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3.3.23>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관련)

종류		배출량
폐기물	1.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젠화합물	100kg 이상
	2.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00kg 이상
	3.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20,000kg 이상
	4.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20,000kg 이상
	5. 그 밖의 폐기물	30,000kg 이상
기름 중 지속성유(원유·연료유·중유·윤활유)와 폐유		유분총량이 100kl 이상
유해액체물질	1.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10,000 l 이상
	2.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류 물질	25,000 l 이상
	3.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Z류 물질	25,000 l 이상
	4.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100,000 l 이상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인력

자격 능력	대체 가능 인력	
	대체 경력	전공연구분야
가. 해양기술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보유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 연환경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보유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수산양식 2)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관리 3) 국토개발직무분야 중 지질 및 기반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환경공학
다.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환경·수산양식 2)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환경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경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수산학 지리학

1) 정보처리직무분야 중 정보처리		
2) 안전관리직무분야 중 산업위생관리		

2. 장 비

명칭	수량
가. 기름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분석장비 1) Gas Chromatograph-FID 2) Gas Chromatograph-MSD 또는 Gas Chromatograph-MS 3)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4) 형광분광분석기(Spectrofluormeter)	각 1대 이상
나. 환경독성 및 해양생태 영향평가 분석장비 1)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2) 현광현미경 3) 해부현미경 4) Scintillation Counter 5) 분광분석기(Spectrotomometer) 또는 Plate Reader	각 1대 이상

비고 : 장비를 갖춘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또는 측정대행자와 해당 장비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4]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

분야	조사항목	비고
자연환경	1. 기상 2. 해류·조류 3. 해저지질 4. 해양환경(수질·생물·퇴적물) 5. 해양생태계	
생활환경	1. 연안 및 해역이용 2. 수산물의 안정성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사회·경제환경	1. 인구 2. 주거 3. 산업 4. 어업현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14.12.16.>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제61조제2항 관련)

1.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p>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류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2)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3천㎡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3) 항만 및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만㎡ 이상인 경우. 다만, 항로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5만㎡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p>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2)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3천㎡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어항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만㎡ 이상인 경우. 다만, 어항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 5만㎡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p>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길이 150미터 이상 또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p> <p>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로서 굴착면적이 2만㎡ 이상 또는 굴착량이 5만㎡ 이상인 경우</p> <p>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로서 그 면적</p>

	<p>이 5만㎡ 이상 10만㎡ 미만 또는 그 양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그 양이 20만㎡ 이상인 경우). 다만, 항로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포락지·간석지의 토지조성사업</p> <p>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바닷물 또는 오수를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로서 관의 지름이 400mm 이상인 경우. 다만,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로서 영해에서 채취량이 20만㎡ 미만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량이 40만㎡ 미만인 경우</p> <p>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로서 그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p> <p>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영해에서 투기량이 20만㎡ 미만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투기량이 40만㎡ 미만인 경우(「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에 버리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카.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에서 채취면적이 10만㎡ 미만이거나 또는 채취량이 20만㎡ 미만인 경우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면적이 20만㎡ 미만이거나 또는 채취량이 40만㎡ 미만인 경우</p>
<p>바다 골재의 채취</p>	<p>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 안에서 채취량이 20만㎡ 미만인 경우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량이 40만㎡ 미만인 경우. 다만, 나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해역이용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p>

<p>공유 수면의 매립</p>	<p>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바다·바닷가에서의 매립으로 한정한다.</p> <p>나. 다음 각 호의 처분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바다·바닷가에서의 매립으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의 고시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7) 「어촌·어항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9)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1)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13) 「항공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14)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1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1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	--

- 18)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2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고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22)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 23)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에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동의
-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26)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 2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28)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2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30)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 31)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33)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
- 3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3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고시

	<p>37)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p> <p>38)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p> <p>3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 또는 승인</p> <p>4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p>
--	---

2.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 가.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범위 미만의 사업
- 나.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사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 라.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에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 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해역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나.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개선복구사업의 사업규모가 개선복구사업의 원인이 된 피해를 입기 전의 시설(시설의 일부만 피해를 입고 개선복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말한다)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개선복구사업의 원인이 된 피해를 입기 전에 점용·사용하였던 공유수면(점용·사용하였던 공유수면의 일부만 피해를 입고 개선복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의 일부를 말한다) 면적보다 15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 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 나. 오일펜스, 오탁(汚濁) 방지막 등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 다. 부유식(浮游式) 등부표(燈浮標), 스파 부이(spar buoy)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 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나 백사장에서의 차양막 등 이동시설물의 설치 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2.11.27>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제63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규모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항로 등의 유지를 위한 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면적: 10만m ² 이상 물량: 20만m ³ 이상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영해: 채취량 20만m ³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채취량 40만m ³ 이상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에 버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해: 물량 20만m ³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물량 40만m ³ 이상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모든 해저광물 채취 행위
5.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행위	영해: 채취면적 10만m ² 이상이거나 채취량 20만m ³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채취면적 20만m ² 이상이거나 채취량 40만m ³ 이상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개발하는 행위	1일 취수량: 5만m ³ 이상
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제8호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영해: 채취량 20만m ³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채취량 40만m ³ 이상
8.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모든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양자원을 이	영해: 이용·개발면적 10만m ² 이상이거나 이용·개발량 20만m ³ 이상

용·개발하는 행위	배타적 경제수역: 이용·개발면적 20만㎡ 이상이거나 이용·개발량 40만㎡ 이상
-----------	---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 시기는 가장 먼저 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나. 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등의 당시에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규모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5.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을 2인 이상이 시행할 때에는 사업규모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3.3.23>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제71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조사주기
1.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공유수면의 매립 대상사업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5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까지	사업시행 중 반기별 1회
2. 별표 16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 후 3년까지	사업시행 중 분기별 1회, 사업완료 후 반기별 1회

비고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의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가. 특별한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 통보 시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을 조정한 경우
 - 나.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해양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

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

1. 대항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요건

가. 조직

-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검사기준을 개발할 수 있고 해양오염방지 및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3)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출 것

나. 검사원

-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출 것

다. 기술개발

-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 2) 품질관리능력을 갖출 것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대항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대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 2) 발급된 증서
- 3) 기술자료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해지요건

비고

협정의 내용 중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대항범위, 감독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자발적 회원국 검사 원칙 및 절차」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의2] <개정 2013.3.23>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유출물질		포상금액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만원	
기름	중질유	3,000 ℓ 이상		2,000 ℓ 이상 3,000 ℓ 미만		1,000 ℓ 이상 2,000 ℓ 미만		500 ℓ 이상 1,000 ℓ 미만		50 ℓ 이상 500 ℓ 미만		5 ℓ 이상 50 ℓ 미만		5 ℓ 미만			
	경질유	5,000 ℓ 이상		3,000 ℓ 이상 5,000 ℓ 미만		2,000 ℓ 이상 3,000 ℓ 미만		1,000 ℓ 이상 2,000 ℓ 미만		100 ℓ 이상 1,000 ℓ 미만		10 ℓ 이상 100 ℓ 미만		10 ℓ 미만			
	선저폐수											1,000 ℓ 이상		1,000 ℓ 미만			
해양배출폐기물 (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경우)				10톤 이상		5톤 이상 10톤 미만		3톤 이상 5톤 미만		1톤 이상 3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폐기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6가크롬화합물, 유기알로젠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불화물, 케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10톤 이상		5톤 이상 10톤 미만		1톤 이상 5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및 그 밖의 폐기물					25톤 이상		15톤 이상 25톤 미만		10톤 이상 1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5톤 미만			
유해액체물질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10,000 ℓ 이상		5,000 ℓ 이상 10,000 ℓ 미만		1,000 ℓ 이상 5,000 ℓ 미만		500 ℓ 이상 1,000 ℓ 미만		500 ℓ 미만			
	아세트론,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 Z류 물질					25,000 ℓ 이상		15,000 ℓ 이상 25,000 ℓ 미만		5,000 ℓ 이상 15,000 ℓ 미만		1,000 ℓ 이상 5,000 ℓ 미만		1,000 ℓ 미만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10 ℓ 이상		10 ℓ 미만			

비고

1.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2. 중질유란 원유, 병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 경질유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제 97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1호	250만원
나.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배출물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승인받은 배출물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1.1배 미만인 경우 나)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1.1배 이상 1.3배 미만인 경우 다)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1.3배 이상 1.5배 미만인 경우 라)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1.5배 이상 2.0배 미만인 경우 마)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2.0배 이상인 경우 	100만원	
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호의2	30만원
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	법 제132조	50만원

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2호	
마. 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3호	30만원
바.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4호	30만원
사. 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5호	50만원
아. 법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6호	30만원
자.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 제6호의2	30만원
차. 법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 제6호의3	30만원
카.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4	30만원
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5	30만원
파.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6	30만원
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2호	250만원
거.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제2항 제2호의2	250만원
너.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32조제2항 제2호의3	500만원
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2항 제2호의4	500만원
러.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경우	법 제132조 제3항제1호	200만원
머.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3호	500만원
며.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경우	법 제132조 제3항제2호	200만원
서.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7	30만원

경우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어.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8	30만원
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7호	30만원
차.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8호	50만원
커.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8호의2	30만원
터.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4호	300만원
퍼.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한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4호	500만원
허. 법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9호	50만원
고. 법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건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0호	50만원
노.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경우	법 제132조 제3항제3호	200만원
도. 법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경우	법 제132조 제3항제4호	200만원
로.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경우	법 제132조 제3항제5호	200만원
모. 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1호	50만원
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1호의2	30만원
소. 법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2호	30만원
오.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5호	250만원
조.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6호	250만원
초.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3호	50만원
코.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4호	100만원

토.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5호	100만원
포.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경우 및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7호	500만원
호. 법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8호	250만원
구. 법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6호	50만원
누. 법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9호	250만원
두.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7호	50만원
루.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1호	1,000만원
무. 법 제8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10호	250만원
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11호	250만원
수.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12호	250만원
우.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8호	50만원
주.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19호	50만원